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****미국 원산지인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****관세 추가징수 조치의 조정에 관한 공고**세위회공고[2020]1호중미 무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<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>, <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>, <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> 등 법률 법규 및 국제법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프로세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2020년 2월 14일 13시 01분을 기점으로 <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 원산지인 일부 수입상품(제3차)에 대한 관세 추가징수에 관한 공고>(세위회공고[2019]4호)에서 규정한 추가징수율을 조정한다. 해당 공고 첨부문건1의 제1부문, 제2부문에서 열거한 각 270개, 646개 세목상품의 추가징수율을 10%에서 5%로 조정한다. 제3부문, 제4부문에서 열거한 각 64개, 737개 세목상품의 추가징수율을 5%에서 2.5%로 조정한다.  상술한 조정을 제외한 기타 미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조치는 계속하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2020년 2월 6일 |  | **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****关于调整对原产于美国的部分****进口商品加征关税措施的公告**税委会公告〔2020〕1号为促进中美经贸关系健康稳定发展，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》、《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》、《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》等法律法规和国际法基本原则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按程序决定，自2020年2月14日13时01分起，调整《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（第三批）加征关税的公告》（税委会公告〔2019〕4号）规定的加征税率。该公告附件1第一、二部分所列270个、646个税目商品的加征税率，由10%调整为5%；第三、四部分所列64个、737个税目商品的加征税率，由5%调整为2.5%。　　除上述调整外，其他对美加征关税措施，继续按规定执行。　　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　　2020年2月6日 |